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3188호

공포일자 : 2011. 9. 30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02-2110-5472)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이유

전기위원회 재정(裁定)에 대한 소송의 상대방을 다른 당사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기설비의 이설(移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며,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500호, 2011. 3.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위원회 재정의 신청 절차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위원회 재정의 신청 절차의 구체화(안 제39조의2 신설)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재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기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전기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와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각각 마련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이설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안 제50조 신설)

송전선로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상 또는 지하 공간별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분쟁의 소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기안전관리제도 등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금년 4/4분기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3152호**
공포일자 : 2011. 9. 22
담당부처 : 제품안전정책과(02-509-7412)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체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제재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94호, 2011. 3.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정기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연속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다음의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정기검사 결과가 안전기준에 1회만 적합한 경우에도 다음의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안내

- **부 령 : 제204호**
공포일자 : 2011. 9. 30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02-509-7412)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94호, 2011. 3.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의 경우 국제 기준,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입 중 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관 전에 받도록 하되 최초로

안전 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기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자율안전 확인대상제품인 초음파세척기를 전기세척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2항 단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11-120호
예고기간 : 2011. 9. 15 ~ 10. 5
담당부서 : 소방산업과(02-2100-5387)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체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정하고, 동일한 법령위반 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국민의 불편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한편, 30층 이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제3항 신설)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등록을 해주는 국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한 공사대금 압류 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해당 소방시설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개선(안 별표4 개정)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에서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강화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5 개정)

동일한 법령위반 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과태료 근거를 삭제하고, 부과금액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과태료 부과 합리성이 기대됨

낙찰자의 계약검토



글 _ 박기동 변호사

- 現 국세청 반포세무서 국제심사위원
- 現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사심의위원 부위원장
- 現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現 경찰위원회 경찰위원

만해(滿海)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02-595-9191)

Q 발주자는 낙찰자와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자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입찰공고의 내용을 무시하고 입찰공고의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을 계약조항으로 정하면, 낙찰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낙찰자의 결정은 예약의 성립 단계에 머물러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다4160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때의 권리 의무는 계약서에 첨부된 조건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사례

1. 발주청으로부터 동절기 공사중지로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째 : 발주청으로부터 용역 일시중지 후 10일 이내에 A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원배치계획 변경을 승인(동절기 중지 현재까지만 배치하고 그 이후는 배치 안함) 받았을 경우 용역중지 2개월 이내라도 A감리원을 다른 PQ 및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둘째 : 동절기 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감리원 배치 변경신고서를 용역 일시중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 1)에 대하여

- PQ고시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시·도지사(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참여감리원을 PQ참여 및 타 현장 감리원배치 시 교체빈도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중지 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감리원을 교체하여 PQ참여 및 타현장 감리배치는 가능하나 이 경우 교체빈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동절기 용역 일시중지는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10. 1. 14)

2. 도로공사의 부대공사인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전기감리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10. 1. 27)

특허 및 실용신안의 최초 출원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 분할을 통해 ◇◇법인으로 등록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인정 여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가목 및 나목(2)에서 “개발실적”은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최초 등록권리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10. 1. 27)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와 공동주택의 감리원 배치기준

보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감리원중 1인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질의1] 연면적이 18만㎡인 신축허가 업무시설 현장입니다(전기공사기간 2년). 본 공사의 법적 감리원 배치 인력을 알고 싶습니다. (E)책임 1인, 보조4인, 비상주1인

[질의2] 질의 1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 제5항을 적용하여 감리업자와 발주자간의 배치인원수 조정이 있을시 보조감리원을 최소로 배치하려면 몇 인의 감리원을 몇 개월 투입해야 하는지요?

[질의3] 본 현장에 비상주 감리원을 투입해야 하는지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질의 1·2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 나목 건축물 및 비고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18만㎡인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5인(1인은 고급감리원), 비상주감리원 1인을 전력시설물공사 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 보조감리원 0.5인은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배치

• 질의 3)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10. 1. 15)